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

2013. 6. 24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3.6.03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3.6.07.

다. 상정일자 :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(2013.6.24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구 본 수 교육지원과장

가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에 따라 장학재단
설립시 장학기금운용 기금의 잔액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1)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에 따라 장학기금 장학재단에 출연

2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폐지 조례

- 제2조(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이 조례의 폐지에 따라 발생되
는 기금의 잔액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
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설립되는 장학재단에 출연한다.

- 부칙 제1조(시행일)이조례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학재단의 설립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본 계획안은 장학기금을 장학재단으로 전액 출연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, 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 부칙 제2조에 “이 조례의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기금의 잔액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설립되는 장학재단에 출연한다.” 등에 근거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